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8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1 ~ 25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1
2011 ~ 26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11 ~ 27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1 ~ 28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011 ~ 29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안	37
2011 ~ 30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	45
2011 ~ 31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7
2011 ~ 32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67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25
----------	-----------

제출연월일	2011.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1977년 제정된 ‘군기’를 현 시대적 정서에 맞도록 변경하여 기존 상징물과 통합 규정함으로써 군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상징물”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상징물이 나타내는 의미와 기본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상징물의 종류 :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가, 동·식물
 - 동·식물 : 군화(개나리), 군목(감나무), 군조(비둘기)

다.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상징물의 관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상징물은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군기·심벌마크 및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함

마. 종전 군기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3조).

- 군기 변경 및 상징물 통합 규정에 따른 종전 군기조례는 폐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군기는 이 조례에 따른 새로운 군기를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추경예산으로 확보(1,500천원 정도)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1. 3. 21. ~ 4. 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가, 동·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군가 : 별표 4
 5. 동·식물 : 군화(郡花)-개나리,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비둘기
- ② 군화, 군목, 군조가 상징하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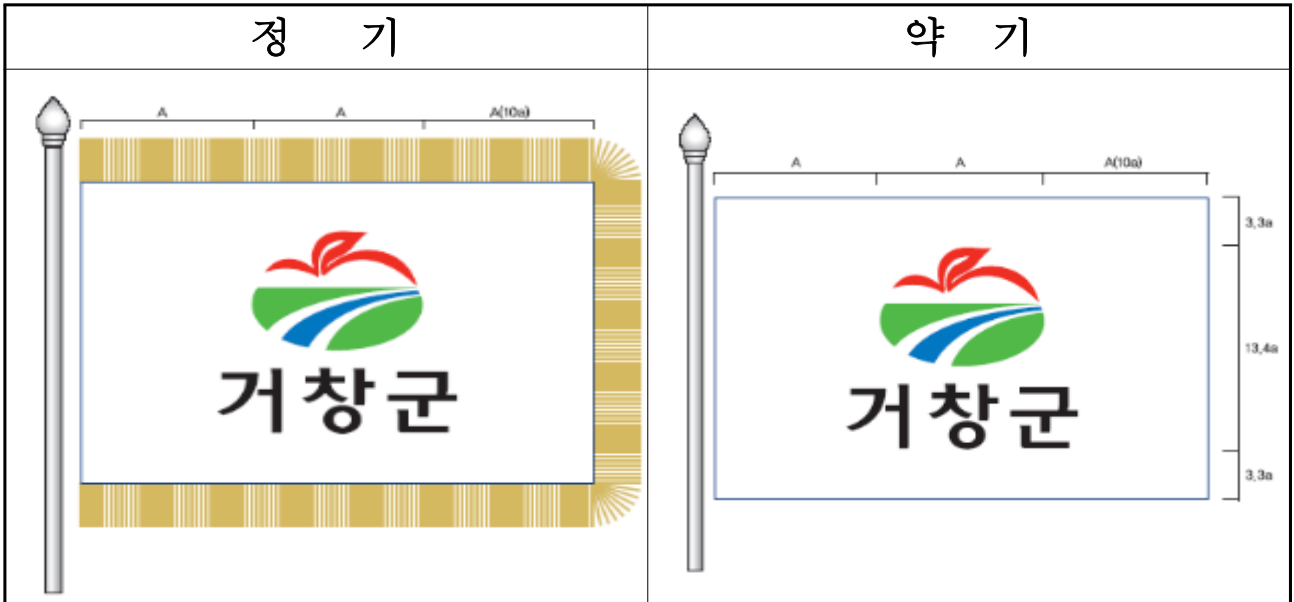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기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군기는 이 조례에 따른 새로운 군기를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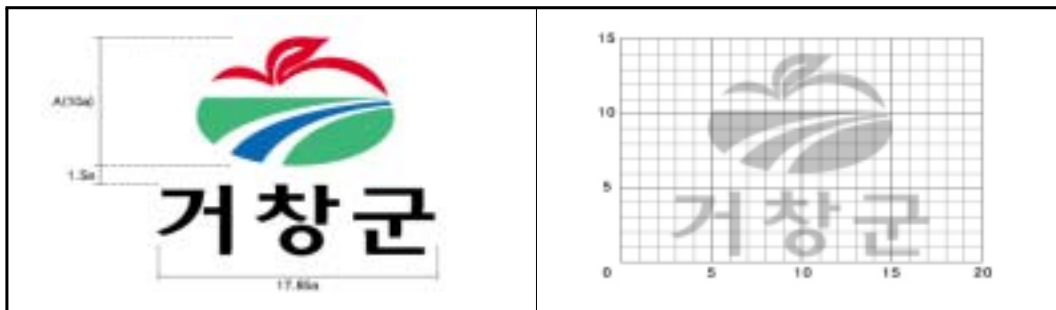
[별표 1] 군기

(1) 의장기(정기) 및 계양기(약기)



(2) 사용 및 제작요령

- 의전 행사시에 주로 사용하는 의장기(정기)는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자수를 놓고 끝부분은 금줄로 장식하여 마무리 한다.
- 군기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 심벌마크와 로고는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군기의 규격은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군기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로고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별표 2] 심벌마크

(1) 기본형 및 작도법

기본형	작도법
	

(2)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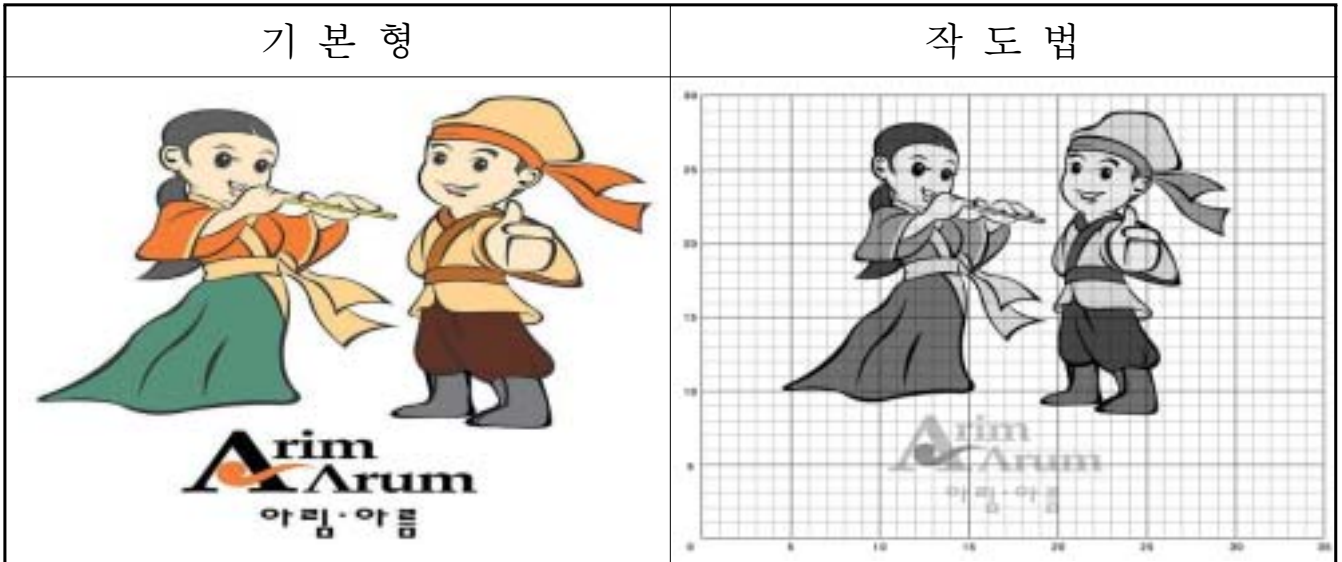
- 전체적인 모형은 거창의 특산물인 사과를 표현
- 초록색은 넓은 들, 청색은 맑은 물, 2개의 백선은 교통의 요충지를 표현

(3) 색상규정

 <p>거창 Blue PANTONE 2935C</p>	<p>거창 Blue : PANTONE2935C C:100 M:46</p>
 <p>거창 Green PANTONE 361C</p>	<p>거창 Green : PANTONE 361C C:69 Y:100</p>
 <p>거창 Red PANTONE 485C</p>	<p>거창 Red : PANTONE 485C M:95 Y:100</p>

[별표 3] 캐릭터

- (1) 명칭 : 아림과 아름
- (2) 기본형 및 작도법



(3) 의미

- 둔마리 고분벽화의 피리 부는 여인상을 모티브로 개발
- 아름답고, 늠름하며, 거창하다는 거창군민의 기상을 함께 나타냄
- 아림(娥林) : 거창의 모습이 여인의 눈썹처럼 아름다운 숲 같다는 데서 유래(거창의 여인상)
- 아름(娥凜) : 늠름하고 멋진 거창의 남성으로 전진과 도약

(4) 색상규정

PANTONE 166C			PANTONE 1605C
PANTONE 625C			PANTONE 4975C
PANTONE 149C			PANTONE 421C
PANTONE 604C			PANTONE 424C
PANTONE 719C			PANTONE 425C
PANTONE 1775C			PANTONE 426C

[별표 4] 군가

군민의 노래

작사 박종건 / 작곡 이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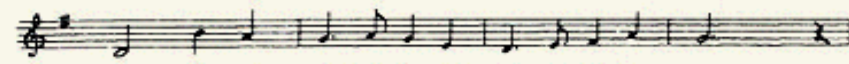
1. 소 백 산 출 기 따 라 덕 유 산 솟 고
2. 옛 가 야 빛 난 문 화 전 통 을 잇 고
3. 기 름 진 산 과 들 엔 풍 년 가 높 고



유 구 한 낙 동 강 물 에 서 흐 른 다
슬 기 른 화 랑 도 의 피 가 끓 는 다
골 마 다 마 을 마 다 건 설 로 안 다



산 높 고 물 말 은 아 느 한 거 창
뛰 어 난 새 일 쉼 자 라 난 거 창
새 나 라 새 마 을 꽃 피 는 거 창



어 화 라 이 강 산 이 우 리 의 향 토
어 화 라 이 강 산 이 우 리 의 희 망
어 화 라 이 강 산 이 우 리 의 일 터



(후렴) 가 승 높 이 불 러 라 건 설 의 아 침



새 고 장 이 록 하 는 군 민 의 노 래

[별표 5] 상징물(군화, 군목, 군조) 의미

구분	상징의미	특징
군화-개나리	강한 인내력과 생활력으로 밝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앞장서서 걸어가는 소박한 군민의 기상	우리 고장에는 산기슭, 밭·논두렁, 울타리 등에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밝고 소박한 군민성과 일치
군목-감나무	검소 강건하고, 생산적이며, 성실한 군민성을 나타냄	예부터 마을에 감나무가 많고, 구읍지에는 감을 나라에 진상하였다는 기록과 감의 산지임을 나타내는 시목리, 홍감리, 감나무골 등의 동명이 많을 뿐 아니라 감나무의 특성이 군민성과 일치함
군조-비둘기	서로 협동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군민성을 상징	우리고장에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많고 '협동'과 '평화'를 상징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26
----------	-----------

제출연월일	2011.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교통, 환경오염 및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도별 활성화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시행과 그 관련 협의·보고 및 공고·열람 등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자전거의 날,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민자전거·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보험 가입,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연구·개발 및 평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군민자전거·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6장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1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9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2011년 추경예산 확보 계획(82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3. 15. ~ 4. 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분되는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를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7조·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단지등에 설치하는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군민자전거”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7. “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군민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명품도시 창조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군민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영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4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제11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주간으로 설정·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주간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자전거의 이용 가능
2. 주민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군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주민자전거는 주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할 것
4. 주민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 그의 귀책사유로 주민자전거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할 것

제14조(주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주민들이 주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여객터미널, 버스승강장, 공공시설 등 자전거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주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거창군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 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제20조(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등의 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창조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도시계획·도로교통 또는 자전거이용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군민자전거·군민자전거 전용주차장·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27
----------	-----------

제출일자	2011.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용 차량 감면대상자의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연장하고,
-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납세의무자의 편의 제고 및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 외국인이 국내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규정
-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이 촉박하여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기한 연장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세액 공제(안 제16조의2 신설)

-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
- 전자송달 +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 : 고지서 1장당 300원 공제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8조)

-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 : 제13조제3항 → 제13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92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5조, 제74조의2
- 「지방세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1. 3. 30. ~ 4. 1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군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군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군세(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8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대체 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군세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 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6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균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균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균세(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p> <p>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p>
<p>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8조(감면 제외대상) -----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p>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28
----------	-----------

제출연월일	2011.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시험 업무 이관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불필요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통합하여 정비하는 한편,
- 제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과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합한 보건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

- 현행 :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 거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 변경 :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나.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의 징수기준과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의 적용기준 및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징수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보건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
-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의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다. 건강진단서 등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및 별표).

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진료비의 면제대상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를 추가하며, 진료비를 면제하는 범위를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거짓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한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합한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2조·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
-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 「거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나. 예산조치 : 2011년 당초예산 확보(640,0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4. 19. ~ 2011. 5. 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보건소수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그 밖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의 진료비는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와 검진·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이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
7.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실험·검사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
2.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7조(징수 및 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진료를 하거나 제증명발급을 한 그날에 징수하며, 현금이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제증명발급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건강진단서	1통	17,930	혈액검사, 흉부직접촬영, B형간염검사, 간기능2종 검사, 빈혈검사, 소변검사, 신체측정 포함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	1,500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 따른 수수료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	“	4,000	
병 진단서	“	3,700	
기발급 증명서류 추가 발급	“	300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29
----------	-----------

제출연월일	2011.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농산물을 축제의 주제로 개발 및 승화시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축제의 명칭, 주관 및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축제의 명칭 :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
- 축제 주관 및 개최시기 : 축제는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함

나.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과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축제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축제행사의 진행, 축제의 평가 및 결산 등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설치하는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의 구성과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축제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축제의 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 반영(350,0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3. 28. ~ 4. 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청정 거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농산물을 축제의 주제로 개발 및 승화시켜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녹색곳간거창농산물 대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녹색곳간”이란 거창의 넓은 들과 산 등 싱싱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지역 농산물을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축제의 명칭)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축제의 명칭은 녹색곳간거창 농산물대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축제 주관 및 개최시기) 축제는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 축제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축제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축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진행
5. 축제의 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축제와 관련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농업·문화관광·예술·사회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장이나 지역발전 및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축제감독) 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축제감독을 둘 수 있다.

② 축제감독은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다.

③ 축제감독은 축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연출, 진행 등을 총괄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괄 분과위원회 : 축제의 전체 기획 및 홍보, 회의, 회계, 서류의 정리 및 보관,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2. 행사 분과위원회 : 전야제, 개회식, 폐회식, 각종 공연의 추진
 3. 전시 분과위원회 : 주제관 조성, 농특산물 전시, 판매코너 운영
 4. 체험 분과위원회 :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지원, 음식코너 운영
 5. 자원봉사 분과위원회 : 축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운영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축제 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축제 지원 및 평가

제1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및 결산)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축제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그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결과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30
----------	-----------

제출연월일	2011.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거창명품 사과를 주제로 한 관광과 체험, 교육, 홍보, 판매 등 종합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메카 육성을 위하여 조성한 거창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사과테마파크의 주요 시설과 그 소재지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사과테마파크

- 체험시설 : 고제면 봉계리 일원
- 공원시설(전시관 포함) : 거창읍 정장리 일원

나. 사과테마파크의 수행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사과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전시물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사과테마파크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사과테마파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그 밖에 사과테마파크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사과테마파크의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 및 이용시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개관 :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운영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연휴
-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

※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사과테마파크의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

○ 관람 및 이용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 사과테마파크의 입장료와 체험시설 또는 전시관 이용자의 재료 구입 등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입장료 : 무료

○ 이용료 :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음

마. 사과테마파크의 관람 및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과 사과테마파크에서 제한하는 행위 및 이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전시물의 수집 방법과 절차,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과테마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전시물의 수집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의 기증에 의하되, 전시물을 직접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함

○ 전시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며, 별도의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사. 사과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사과테마파크 부지 안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 운영위탁의 신청 및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위탁기간과 그 기간의 갱신,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지원,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의 운영 위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와 납부방법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아. 그 밖에 사용료의 징수, 사과테마파크의 관리·운영 및 운영위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둠(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4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 반영(599,158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3. 28. ~ 4. 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과테마파크”란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에 소재한 체험시설과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일원에 위치한 공원시설(전시관 포함)을 말한다.
2. “전시관”이란 사과테마파크의 공원시설에 소재한 사과관을 말한다.
3. “전시물”이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사과테마파크에 입장하여 체험시설 및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5.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사과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사과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시물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사과테마파크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4. 사과테마파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사과테마파크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사과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사과테마파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 사과테마파크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이용료) 사과테마파크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 또는 전시관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과테마파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공중이나 전시물 및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사과테마파크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및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관람 및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사과테마파크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물의 수집) ① 군수는 전시관의 설치나 전시·연구 및 교육자료의 확충 등 전시관의 운영을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을 직접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시관에 전시물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전시물 기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전시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전시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전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수집한 전시물이나 전시관의 시설물 또는 그 밖의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시물 등의 망실·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보험 가입)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이용자의 사망 등 인적·물적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과테마파크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과테마파크의 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전시품·기념품 판매점
3.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제16조(준용) 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과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기 증 증 서

주 소 :

성 명 :

귀하의 소중한 전시물 및 역사자료를 우리군에 기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시관 전시·연구 및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전시물 목록 별첨(기증 목록 별첨)

사과테마파크 운영위탁 신청서

※ 접수번호

신청인(법인·단체명)			
주 소			
성명(대표자)		법인 또는 작목반 신청 시 참여인원	명
사과재배면적	m ²	사과재배경력	년
농업기술관련 자격증		컴퓨터관련 자격증	
법인 또는 작목반장 추천 여부		농기계소유	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 ① 사과테마파크 운영계획서
- ②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 ③ 법인(자기)소개서 1부
- ④ 농지원부 1부
- ⑤ 농업기술관련 자격증
- ⑥ 컴퓨터관련 자격증
- ⑦ 사과관련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의 추천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31
----------	-----------

제출연월일	2011.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과학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명칭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나. 과학관이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천적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의식 고취
-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천적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천적을 이용한 체험·탐구·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 개관 :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운영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추석연휴
 -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
- ※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의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
- 관람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 관람료의 기준과 관람권의 발급 및 관람료의 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관람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20명 이상)	
어 른	2천원	1천원	20세 ~ 64세
청소년	1천원	5백원	13세 ~ 19세
어린이	5백원	3백원	7세 ~ 12세

○ 관람권 발급 : 별지 제1호서식

○ 관람료 일일 징수실적 : 별지 제2호서식

○ 관람료 면제대상

-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 출입자
-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 장애등급 제1급~ 제3급 해당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배우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등

마. 과학관 관람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과학관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과 과학관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람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관람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과학관부지 안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근거,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위탁기간과 그 기간의 갱신,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그 밖에 관람료의 징수, 과학관의 관리·운영 및 운영위탁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둠(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제5조, 제22조
-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제7조,
-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 반영(388,0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3. 28. ~ 4. 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천적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의식 고취
2.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천적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4. 천적을 이용한 체험·탐구·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
5.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관람시간)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과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9.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10.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입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공중이나 전시물 및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자의 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과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과학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관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전시품·기념품 판매점
3.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2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①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과학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학관의 관람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비 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른	2천원	1천원	20세 ~ 64세
청소년	1천원	5백원	13세 ~ 19세
어린이	5백원	3백원	7세 ~ 12세

[별지 제1호서식]

관 랐 권

<p style="text-align: center;">관람권 원부</p> <p>일련번호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금 원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어 른</td> <td>개인</td> <td>명</td> </tr> <tr> <td>단체</td> <td>명</td> </tr> <tr> <td rowspan="2">청소년</td> <td>개인</td> <td>명</td> </tr> <tr> <td>단체</td> <td>명</td> </tr> <tr> <td rowspan="2">어린이</td> <td>개인</td> <td>명</td> </tr> <tr> <td>단체</td> <td>명</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거창군수</p>	어 른	개인	명	단체	명	청소년	개인	명	단체	명	어린이	개인	명	단체	명	<p style="text-align: center;">관 랐 권</p> <p>일련번호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금 원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2">어 른</td> <td>개인</td> <td>명</td> </tr> <tr> <td>단체</td> <td>명</td> </tr> <tr> <td rowspan="2">청소년</td> <td>개인</td> <td>명</td> </tr> <tr> <td>단체</td> <td>명</td> </tr> <tr> <td rowspan="2">어린이</td> <td>개인</td> <td>명</td> </tr> <tr> <td>단체</td> <td>명</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거창군수</p> <p>※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p>	어 른	개인	명	단체	명	청소년	개인	명	단체	명	어린이	개인	명	단체	명	<p>○ 앞면 : 과학관 전경사진 또는 기획전시</p> <p>○ 뒷면 : 안내도 또는 관람 유의사항</p>
어 른		개인	명																													
	단체	명																														
청소년	개인	명																														
	단체	명																														
어린이	개인	명																														
	단체	명																														
어 른	개인	명																														
	단체	명																														
청소년	개인	명																														
	단체	명																														
어린이	개인	명																														
	단체	명																														
<p>← 5cm → ← 5cm → ← 9.5cm →</p>																																

7
cm

[별지 제2호서식]

관람료 일일 징수실적

결 재	담당자	주 사	과 장

년 월 일

구 분	관람권 판매번호	매 수	징수액	비 고
계				
개인	소 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단체	소 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무료	소 계			
	어린이 (6세 이하)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그 밖에 (공무 등)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32
----------	-----------

제출연월일	2011.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구증가 및 농촌 활력화에 기여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귀농인’, ‘귀농세대’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귀 농 인 :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
- 귀농세대 :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

나.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 위원회 기능
 -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 귀농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 지원사업의 심사, 결정 및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방안 및 고충처리 협의와 귀농 홍보 등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 위원장 : 부군수,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이내
- 위촉위원 임기 : 2년(연임가능)
- 회의개최 : 정기회의(반기별 1회), 임시회의(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시)

다. 귀농 상담실의 설치·운영과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 귀농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4조 부터 제15조까지).

- 귀농 상담실 설치·운영
 - 설치 : 농업기술센터 내
 - 기능 :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의 건의 등
 - 운영 : 인력 및 정보를 갖추고 상설로 운영
- 귀농인 지원사업
 - 귀농인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
 - 안정적인 귀농 유도를 위한 귀농인의 집 운영
 -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 사업
 - 읍·면 및 작목별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인 귀농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지원
 - 전통집들이 행사 등 현지 주민과 화합을 위한 사업
 -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과 선정 및 시상
- 귀농인단체 육성 및 지원
 - 귀농인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라. 그 밖에 재정지원에 따른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지원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보고·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규정을 제4장 보칙으로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9조
- 「농림사업 시행지침」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 시행지침」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 확보(442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4. 1. ~ 4.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통한 농업전문 인력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세대”란 세대주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으로서 2명 이상의 세대구성원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원사업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세대를 말한다.
4.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2장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귀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2. 귀농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주요정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3. 귀농인 지원사업의 심사, 결정 및 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4.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
5.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6.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단체의 대표
4. 성공적인 정착을 한 귀농인
5. 그 밖에 귀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귀농 지원

제14조(귀농 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 센터에 귀농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지역 작목반·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귀농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귀농인·귀농인단체 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농업전문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
2. 귀농세대에 대한 500만원 이내의 영농정착금 지원
3. 농촌체험 후 안정적인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 운영
4. 소규모 귀농마을 조성 사업
5. 읍·면 및 작목별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6. 문화예술인 귀농 유치를 위한 시책사업 발굴 지원
7. 전통집들이 행사 등 현지 주민과 화합을 위한 사업
8.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과 선정 및 시상
9. 그 밖에 안정적인 귀농정착과 귀농인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귀농인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운영 상황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귀농인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